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 금지〉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3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추진배경	2
2. 복권 발매 유사행위 및 국내 복권 구매 중개·대행 금지 (안 제5조의3, 제34조)	6
3. 영리목적의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홍보 금지 (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34조제2항)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불공정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추진배경

현행법상 복권이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 제2조¹⁾ 각 목에 따른 인쇄복권(추첨식·즉석식), 전자복권(추첨식·즉석식), 온라인복권, 혼합형복권(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의 발행·판매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수탁사업자가 복권을 발행하고, 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수탁사업자와 계약한 복권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구조임.

특히, 복권의 종류 중 온라인복권(로또)은 복권 판매액의 상당부분을 차지²⁾하고 있고(2024년 기준 복권판매액 전체의 81.2%) 판매수입도 2024년 약 5조 9,56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행법은 온라인복권(로또)의 경우 특별히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제한을 두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우리나라 복권 판매는 온라인복권(로또)에 편중되어 있음.

*온라인복권 판매비율: ('20)87.5%, ('21)86.0%, ('22)84.7%, ('23)83.7%, ('24)81.2%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수입(2020~2024)]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709,025	5,137,139	5,446,760	5,652,586	5,956,208

자료: 복권위원회

[현행 복권법상 벌칙 부과 조항]

조항	금지 행위	벌칙(제34조)
제4조 제1항	복권위원회 및 (재)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행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의2 제1항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	
제5조의2 제2항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제10조	복권사업자 등이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조 제1항	영리 목적으로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	
제6조 제1항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제6조 제2항	(재)수탁사업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판매자와 계약한 (재)수탁사업자	
제6조 제3항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제6조 제4항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제6조 제5항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영리목적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제12조 제2항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복권업무를 재위탁한 수탁사업자	

※ 형벌이 아닌 과태료(복권법 제36조) 내용 미포함

한편, 복권 판매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최근 복권 공식수탁업체 또는 제휴업체로 위장하여 복권발행 유사 사

이트를 운영하면서 예치금을 편취하는 사례,³⁾ 복권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복권 구매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대가를 수취하는 사례 등⁴⁾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① 복권위원회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매 유사행위, ② 국내 복권 구매의 중개·대행, ③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 제공·홍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권사업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3) 뉴스핌, “5년간 복권 불법사이트 2만건 신고…61% 차단 안돼 ‘구멍’”, 2024.10. 등

4)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여전! -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 2024.5. 등

2 복권 발매 유사행위 및 국내 복권 구매 중개·대행 금지 (안 제5조의3, 제34조)

현행	개정안
○ <신설> ○ <신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복권을 발행한 자 -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 수탁사업자의 직원 등이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신설>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조제1항(복권액면가)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 <신설> - <신설> -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 제6조제2항(계약 시 복권위증인의무)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 온라인복권 판매를 알선한 자 -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 유사행위의 금지 등(제5조의3①) -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금지 ○ 복권 구매 중개·대행 금지(제5조의3②1.) - 영리목적으로 국내 발행 복권의 구매를 중개·대행하거나 이를 통해 당첨자에게 이익 제공 금지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①)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제5조의3①을 위반하여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조③) - <현행과 같음> - 제5조의3①을 위반하여 복권 발매나 유사행위를 한 자로부터 복권이나 유사복권을 취득한 자 - 제5조의3②1.을 위반하여 복권을 중개·대행하거나 이를 통해 당첨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먼저, 개정안 중 ‘복권위원회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안 5조의3제1항)의 금지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법 제4조제1항⁵⁾은 복권위원회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아니면 현행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복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것⁶⁾을 발행하는 ‘복권 발매 유사행위’의 개념을 신설하여 불법·유사 복권 판매자 및 이를 구매한 자를 처벌하려는 취지임.

현행(제4조제1항)	개정안(제5조의3제1항)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아니면 <u>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u>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u>이와 유사한 행위</u> 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복권상품과 유사한 게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제휴업체를 사칭하여 운영하는 등 불법사이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⁷⁾, 수탁사업자(동행복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사이트 등을 신고하여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며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6) 일례로 ‘추첨식 전자복권’과 유사한 형태의 표권을 동행복권의 실제 판매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현행법의 복권의 정의상 ‘추첨번호’가 있으면 복권에 해당하나, 번호가 아닌 ‘모양(☆, △, ○ 등)’을 이용하여 표권을 제작하는 경우 현행법상 복권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7) 복권 발매 유사행위 관련 동행클린센터 신고 접수 건: '22년 6,496건 → '23년 5,358건 → '24년 5,493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복권법」에 명시하여 불법·유사 복권 판매자들 및 이를 구매한 자도 처벌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형법」상 ‘복표’는 「복권법」의 ‘복권’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⁸⁾이며, 개정안의 ‘복권 발매 유사행위’는 「형법」에 따른 ‘복표발매죄’⁹⁾에 해당되어 이미 처벌대상이므로, 「복권법」에 복권 유사행위 금지를 별도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개정안의 벌칙 수준(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도 「형법」(최대: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낮아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¹⁰⁾

8) 복표(福票): 번호나 그림 따위의 특정 표시를 기입한 표(票). 추첨 따위를 통하여 일치하는 표에 대해서 상금이나 상품을 줌.(네이버 사전)

대법원은 복표의 개념요소를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9)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기획재정부도 복권상품을 모사한 불법사이트 등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형법」상 복표는 「복권법」상의 복권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복권법」 규정 시 적용 기준에 대한 중복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개정안과 형법의 복표발매죄 비교]

구분	개정안(유사행위의 금지)	형법(복표발매죄)
발매의 경우	○ 제5조의3제1항 - (주체)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 - (금지행위)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8조제1항 -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 -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득한 경우	○ 제34조 - 5의3①을 위반하여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로부터 복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취득한 자 -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8조제3항 - (주체·금지행위)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 - (벌칙)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유사행위 금지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명	타 사행산업 입법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u>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u>(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다음으로, ‘국내 복권 구매의 중개·대행’(안 5조의3제2항제1호)의 금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법 제6조제4항¹¹⁾에서는 ‘온라인복권(로또)’의 구매 대행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국내 발행 ‘복권’의 구매 중개·대행의 금지·처벌을 명시한다면 온라인복권(로또) 외 복권 구매 중개·대행 행위도 불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억제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제6조제4항)	개정안(제5조의3제2항제1호)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u>온라인복권</u>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u> 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정안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 중개·대행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복권 구매대행에 의한 피해 및 처벌은 주로 해외복권의 경우이고¹²⁾¹³⁾ 국내복권 구매대행에 의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건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④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해외복권 구매대행 관련 동행클린센터 신고 접수 건: '22년 7건, '23년 7건, '24년 6건 / 국내복권 구매대행 관련 신고 접수 건 없음.

13)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형법」 제248조제2항(복표발매중개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도2950 판결) 등 처벌사례 있음. 해외복권의 경우 ‘국내법령’에 의해서 발행된 복권이 아니므로 「형법」 제248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48조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죄’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았음.

은 없다는 측면에서, 「복권법」에 국내 복권 구매 중개·대행 행위 금지를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목적의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홍보 금지 (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 <신설>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설> - 제10조를 위반하여 복권사업자 등으로서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공개·제공한 자	○ 유사행위의 금지 등(제5조의3②2.) - 영리 목적으로 최종 구매자에게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 제공·홍보 금지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4조②) - 제5조의3②2.를 위반하여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홍보한 자 -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5조의3제2항제2호는 영리 목적으로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최근 복권 당첨 예상번호 추천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복권당첨 예상번호 피해 관련 동행클린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2024년 647건으로 2019년(6건)대비 100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복권당첨 예상번호 관련 동행클린센터 민원건수]

(단위: 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민원접수	6	42	47	94	657	647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¹⁴⁾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 사건은 총 1,917건이며, 특히 2022년과 2023년은 각 600건 이상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¹⁵⁾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건수(건)	88	227	332	655	615	1,917
전년대비 증감율(%)	-	158.0	46.3	97.3	△6.1	-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둘째, 복권당첨번호는 과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함¹⁶⁾에도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고 수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제재가 필요하나 현행 복권법에는 이를 위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서울대 통계연구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연구결과 등 복권위원회가 수차례 실시한 연구¹⁷⁾에서 로또 당첨번호 추첨은 독립성(independence: 각 회의 추첨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짐)과 균등성(uniformity: 당첨번호 추첨 시 가능한 모든 당첨번호 조합이 같은 확률로 뽑히는 것)을 만족하는 무작위적인 추첨 방식으로 잘 작동하고

14)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소비자피해 여전! -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 (2024.5.29.)

15) 주요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60.9%)’,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 등임.

16) <당첨번호 예측시스템 특허 거절, 특허법원 2020.11. 6. 선고 2020허2369 판결 참조>

과거의 당첨결과는 미래의 당첨결과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로또 게임에서 모든 조합번호들이 각 1등 내지 5등으로 당첨될 확률은 매 회차마다 동일한 값을 고려하면..<중략>

17) 서울대 통계연구소, 「로또복권 다수당첨 관련 확률·통계적 검증」 용역(2023.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온라인복권 추첨과정 및 시스템 신뢰성 검증」 용역(2023.6.)

있음이 검증되었음. 즉, 예측서비스 업체에서 주장하듯이 과거 당첨번호의 정보를 이용하여 앞으로의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임.

현재 복권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¹⁸⁾에 따른 ‘사기죄’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¹⁹⁾에 따른 ‘거짓·과장 광고’로 처벌은 가능하나, 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행위가 사기 또는 거짓·과장 광고임을 입증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셋째, 복권은 당첨될 기회가 통계데이터 분석이나 기술적 판단 및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오로지 확률, 즉 운에 의해서만 결과가 결정되는 ‘공정한 확률게임’임. 이에 따라 복권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사행성·중독성이 낮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년 주기로 실시·

18)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발표하는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²⁰⁾ 중 ‘도박중독 유병률²¹⁾ 조사’에
서도 복권은 국내 7개 사행산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2022년 참여 사행산업/활동별 도박중독 유병률]

(단위: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사설 사행활동	현금내기 여가/ 친목목적 게임
51.8	60.6	76.3	67.1	9.5	34.1	73.3	87.3	17.3

자료: 2022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p.229

* 스포츠 토트

그러나, 개인의 노력이나 통계 분석에 의해서 번호예측이 가능하고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복권당첨 예상번호 사이트 등의 주장은
공정한 확률게임이라는 복권의 일반인식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복권
의 건전성 훼손 등 복권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복권 당첨번호 예측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였다면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역술에 의한 사주풀이, 무
속인에게 점을 보는 행위 등 미래를 예측하고 대가를 받는 비과학적
행위들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현장 실태 조사·연구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1) 특정 기간 동안(지난 1년) 모집단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추정치.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로 측정할 경우, ‘중위험(moderate risk)’ 과 ‘문제성
(problem)’ 을 합한 비율

또한,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대가를 받고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예측해 준 경우, 이 역시 개정안에 의하여 처벌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²²⁾

둘째, 국내 유사 사행산업 관련 법률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도 게임 결과 예측 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례가 없으며, 미국, 영국, EU 등 주요국도 유료의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가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복권 관련 법제는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연구용역(복권정보 활용 영업 행위 법적 대응방안 연구)을 통하여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행위 규제 관련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외국에서도 복권 예상 당첨번호를 무료·유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정안은 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행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있는데, 이는 현재 같은 사례를 처벌하고 있는 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거짓·과장 광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22) 다만, 이와 별개로 역술인이나 무속인이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였다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사례는 다수 있음.

예를 들어, 굿을 하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4천만원과 금 40돈을 받은 무속인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7104 판결) 등이 있음.

의 벌금)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적정한 법정형 범위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²³⁾²⁴⁾

- 23) 기획재정부는 과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당첨 예상번호를 유료제공하는 것은 사기죄 또는 거짓·과장광고로 처벌은 가능하나,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가 ‘당첨확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문구를 약관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업종·행위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복권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는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예: <로또 예상번호 제공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부 발췌>

“당사의 분석시스템은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당첨확률개선 서비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과보장 및 환불보장을 하지 않으며, 기대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최종책임은 서비스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4) 법제처의 경우, 당첨 예상번호 유료제공 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가벼운 제한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할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예시) 「담배사업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① 담배 갑(匣)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 최종 구매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제34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현행	개정안
<u>나</u>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7. (생략)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로부터 복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취득한 자 3. 제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4. ~ 9. (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문의처

02)6788-5153

참고 1

복권의 종류 및 상품

복권종류		상품명	구매장소
온라인복권		로또6/45	수탁사업자와 판매점 계약(취약계층 우선 계약)을 체결한 로또 단말기가 설치된 판매점 및 수탁사업자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 판매권 제한(취약계층 우선) ²⁵⁾
결합복권		연금복권720+	복권방, 슈퍼, 편의점 등 복권 판매점 및 수탁사업자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 수탁사업자와 협의 후 판매 가능
인쇄복권(즉석식)		스피또2000	복권방, 슈퍼, 편의점 등 복권판매점 ※ 수탁사업자와 협의 후 판매 가능
		스피또2000	
		스피또500	
전자복권 (인터넷복권)	추첨식	스피드키노	수탁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메가빙고	
		파워볼	
	즉석식	트리플렉	
		트레저헌터	
		더블잭	
		마이더스	
		캐치미	

자료: 복권위원회 및 (주)동행복권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2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및 같은 법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은 제외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